

#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075호
2. 발 의 자 : 김 경 의원
3. 발의일자 : 2019. 10. 16.
4. 회부일자 : 2019. 10. 22.

## II. 제안이유

-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 함양 등을 도모하고자 함.

## III.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2.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3. 현장체험학습의 지원계획,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4. 현장체험학습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

육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초·중등교육법」, 「진로교육법」 등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3. 기타사항 : 해당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10월 16일 김정 의원에게 의해 의안번호 제 1075호로 발의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도모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뉘며, 이중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그 성격상 대부분 실외와 학교 밖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은 체험유형에 따라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 진로체험활동 등으로 구분·운영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서는<sup>1)</sup>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

1)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2005. 1. 29.>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며,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1] 현장체험학습의 구분**

구분		개념	소관부서
숙박형 현장체험 학습	수학여행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 자연, 문화 등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해 실시하는 단체 숙박형 여행	체육건강 문화예술과
	수련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는 단체 활동	
	기타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제외한 활동으로, 일정 기간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1일형 현장체험학습		하루에 이루어지는 단순 관광, 관람, 견학, 강의 등 비숙박 체험 활동	
진로체험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직·감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	진로직업 교육과

○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학생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 학습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 보급한바 있으며,<sup>2)</sup>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운영매뉴얼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수립, 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현장답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계약, 사전안전교육 및 사고예방대책, 현장지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19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매뉴얼」을 수립·시행하여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sup>3)</sup>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운영 매뉴얼의 보급, 안전교

2)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교육부, 2016)

3) 진로체험활동은 “2019학년도 서울진로교육 활성화 계획” 및 “진로체험 매뉴얼”에 따름

육의 실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책무 등 총칙적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안전교육,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전체인 구성은 「자치법규 입안실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구성과 체계 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에 대한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는 현장체험학습 소요비용 지원 방안, 프로그램 개발, 학생의 안전보호, 장애 학생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현장체험학습 소요비용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 청소년단체활동, 관광, 관람, 견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체험학습의 경비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체험활동 중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에 한하여 저소득층학생을 대상으로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견학·관람·체험 등 교육사업에 포함된 현장 체험학습의 경우 그 경비가 학교운영비(학교기타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표2]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내역4)**

구 분	지원 자격			지원금액
	법정저소득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타	
초등학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이하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 1인당 40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1인당 14만원 이내 실비 ※ 담당부서: 참여협력담당관
중학교		중위소득 60%이하		
고등학교		해당없음		
사회통합전형 실시학교		중위소득 50%이하		

**[표3] 교육사업에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사례**

부서명	사업내용
교육혁신과	학교현장체험학습 버스 운영
중등교육과	국제고 사회적배려계층 체험학습지원

○ 이렇듯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종류·형태에 따라 담당부서, 지원 방법, 지원 자격 및 금액 등을 달리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현장체험학습 소요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밖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안 제4조 및 제5조)

○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5조제2항제4호의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 교육감의 책무로 조문을 이동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407, 2019.11.18.).

안 제5조(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 (제2항제4호)	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2항)
--------------------------------	-------------------------

4) 2019학년도 초·중·고 학생교육비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참여협력담당관, 2019.2.)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현장 체험학습 환경 조성	교육감은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취약계층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 이와 관련하여 안 제4조는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이미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저소득층 학생 등의 지원, 장애 학생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교육감으로 하여금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은 유사내용의 중복적 규정으로 특별히 조문을 이동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에 용어정비에 대한 의견으로 안 제5조제1항의 “현장체험학습”을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으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소요 비용 지원”을 “소요 재원 지원”으로 수정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동 조례안 제2조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재원”의 사전적 의미는 “재화나 자금이 나올 원천”으로<sup>5)</sup> 동 조항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라는 점에서 용어를 수정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2005. 1. 29.>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 10. 30.>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진로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수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 ③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